



3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음 10월 27일) 제2677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환영”

지방자치법 32년만에 개정

“비판”

지방4대 협의체장

“주민자치회 설치 무산
유감... 반드시 재도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회장 김한중 전남도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돼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사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차인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반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가 불균형을 가속화할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비판을 토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

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고 인구 50만 이상 100만 이하 도시는 제외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0년 기준 인구 65만에 불과한 전주는 특례시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례시 지정을 위해 고분분했던 전주시청, 전주시청안시 등은 지정에서 제외되고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만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문제는 특례시로 지정돼도 수도권이나 지방도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 후 특례시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남 창원시의 경우 인구가 지난 2015년 107만이었으나 올해는 103만으로 급속히 줄어 들어 머지않아 지정 탈락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결국 특례시 지정 제도가 수도권 도시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특례시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만 존재하게 된다”면서 “정치권이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김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요청한 시도지사협의회를 향한 불만도 토로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지정을 반대해 온 결과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반문해 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19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에 관해 단결된 목소리, 하나된 열망을 결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가 불균형과 정면으로 맞서 전주의 전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기자

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중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장은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하고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가 재적의원 총수의 2분의 1만 허용된 것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고 향후 법률개정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율리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맞춰 시·도의회 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의 민의를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 19 이후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보충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 그리고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설치가 이번에 무산됐는데, 향후 법률개정안을 거쳐

반드시 재도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특례시, 사실상 불발 국가불균형 되레 심화”

특례시 지정 탈락에 대해 전주시가 정치권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시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특례시 기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호남평야의 찻줄, 동진강!
강이 품은 이평 만석보는
혁명과 올바른 세상에 대한 꿈을 키워
드디어 1897년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열매가 되고

3.1 독립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불씨로
이어집니다.

혁명의 강
역사의 강
생명의 강
자랑스러운 동진강의 시원(始原) 정읍!

정읍시 산외면 여우치 골짜기에서
시작된 이 작은 물줄기가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정읍의 자랑입니다!

정읍시
JEONGEUP-SI